

# 2022년도 보상지침

## □ 이사비

### ○ 관련규정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5조(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) 제2항 및 [별표4]

### ○ 보상기준

-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[별표4]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

#### < 이사비 산정기준 [별표 4] >

주택연면적기준	이 사 비		
	노 임	차량운임	포 장 비
33㎡ 미만	3인분	1대분	(노임+차량운임) × 0.15
33㎡ 이상 49.5㎡ 미만	4인분	2대분	“
49.5㎡ 이상 66㎡ 미만	5인분	2.5대분	“
66㎡ 이상 99㎡ 미만	6인분	3대분	“
99㎡ 이상	8인분	4대분	“

\* 노 임 : 「통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·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준(조사주기 : 매년 1.1, 9.1 기준 2회 발표)

\*\* 차량운임 :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 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(조사주기 : 연간)

### ○ 산정금액

주택건평기준	이 사 비			
	계(단가)	노임	차량운임	포장비
33㎡ 미만	752,709	445,530	209,000	98,179
33㎡ 이상 49.5㎡ 미만	1,163,846	594,040	418,000	151,806
49.5㎡ 이상 66㎡ 미만	1,454,807	742,550	522,500	189,757
66㎡ 이상 99㎡ 미만	1,745,769	891,060	627,000	227,709
99㎡ 이상	2,327,692	1,188,080	836,000	303,612

\* 노 임 : 148,510원/인 (2022. 1. 1. 기준)

\*\* 차량운임 : 209,000원/대 (2021. 기준)

## □ 주거이전비

### ○ 관련규정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4조(주거이전비의 보상)

### ○ 보상기준

-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·세입자에게 통계작성기관이 조사·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(소유자 2월분, 세입자 4월분)

#### < 가구원수별 적용기준 >

- ① 1인~4인 : 해당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
- ② 5인 :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
- ③ 6인 이상 :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+ (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× 1인당 평균비용)

\* 1인당 평균비용 = (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-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) ÷ 3

### ○ 산정금액

가구원수	가계지출비(월평균)	소유자(2월분)	세입자(4월분)
1인	2,274,597	4,549,194	9,098,388
2인	3,335,731	6,671,462	13,342,924
3인	4,681,694	9,363,388	18,726,776
4인	5,670,764	11,341,528	22,683,056
5인	5,759,908	11,519,816	23,039,632

※6인이상일 경우 1인 평균단가 808,059원

## □ 영농손실액

### ○ 관련규정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8조(농업의 손실에 대한보상)

### ○ 산정방법

-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× 2년분( '15.04.28. 개정)

### ○ 산출금액

- 강원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수입 직전 3년 평균 × 2년분

① 19년 강원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수입: 1,711원/㎡

② 20년 강원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수입: 1,772원/㎡

③ 21년 강원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수입: 1,845원/㎡

- $(1,711 + 1,772 + 1,845) \div 3 \times 2 = 3,552$  [단위:원/㎡]